

# 혜전대학교 P-TECH 공동훈련센터 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 2020.12.22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 P-TECH 공동훈련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위원회 설치 및 운영)

-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  1. 학습기업의 대표자 : 2인 이상
  2.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지역 일학습지원부장
  3.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소속공무원 : 1인
  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, 직업교육훈련관련 전문가, 관할교육청 공무원, 사업주 단체 대표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1.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2. 예산편성에 관한사항
  3. 사업 과 관련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
  4.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

## 제3조 (위원의 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임기는 조정될 수 있다.

## 제4조 (회의소집 및 회의)

-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회의록은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.
-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5조 (회의비 지급)

위원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「P-TECH공동훈련센터 지원금 및 지원금 집행기준」에 의거하여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 (운영세칙)

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20.12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